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34조 제3항제1호	100 200	200 250	300 300
나.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4조 제3항제2호	200	250	300
다.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1항	1,000		
라. 법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3항제3호	200	250	300
마.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4조 제3항제4호	300		
바.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1호	500		

사.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2호	500
아. 법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3호	500
자.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4호	500
차.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5호	500
카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6호	500
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4조 제3항제5호	300
파.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 제2항제7호	500